

【 8 】 양주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제출연월일 : 2006. 11. .

제출자 : 양주시장

1. 제안이유

- 지역주민과 행정기관과의 중간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리·통장들이 행정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임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실시하고
-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사기 진작 및 업무 여건 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리·통장들의 화합·단결을 도모하고 원활한 리·통 행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시장은 리·통장이 읍면동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매년 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
(안 제6조 제1항)
- 임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절한 보상을 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
- 리·통장의 임무 수행능력 배양, 사기진작 및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국내외 선진지 견학, 직무연수, 체육대회, 모범 리·통장 표창, 간담회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
- 나. 제1항 각 호에 명시한 사업의 세부적인 추진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 함.(안 제6조 제2항)

양주시 조례 제 호

양주시 리·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양주시리·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양주시리·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”를 “양주시 리·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제6조(건강 추구권 및 업무여건 향상 등) ①시장은 리·통장이 읍·면 ·동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매년 예산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임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정한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
 2. 리·통장의 임무 수행능력 배양, 사기진작 및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국내외 선진지 견학, 직무연수, 체육대회, 모범 리·통장 표창, 간담회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
- ② 제1항 각 호에 명시한 사업의 세부적인 추진방법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신구조문 대비표	개정내용
<p><u>양주시리·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<u>양주시 리·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</u></p> <p><u>제6조(건강추구권 및 업무여건 향상등)</u></p> <p><u>① 시장은 리·통장이 읍·면·동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매년 예산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<u>1. 임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정한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가입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<u>2. 리·통장의 임무 수행능력 배양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<u>사기진작 및 시에서 권장하는 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국내외 선진지 견학, 직무연수, 체육대회, 모범 리·통장 표창, 간담회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</u></p> <p><u>② 제1항 각호에 명시한 사업의 세부적인 추진방법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